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20 선고 2020나42370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20 선고 2020나42370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23 선고 2019가단5218380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온새미로

담당변호사 김성진, 김연정, 김제현, 임승현, 추은혜

피고, 항소인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봉호

변론 종결 2021. 4. 13.

판결 선고 2021. 5. 20.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23. 선고 2019가단5218380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7 지분에 관하여 2018. 10. 31.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2,186,142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186,14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피고와 C 사이에 2018. 10. 3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2/7 지분에 관하여 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5,900,42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이 무자력의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지분을

피고에게 귀속시킨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의 사해의사와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피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채무자의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 피고는 I의 근저당권의 피보전채권은 망 D가 아닌 C에 대한 것으로 C이 위와 같이 상속재산으로 I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게 된 것일뿐, 피고는 악의의 수익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악의 추정이 반복되어 그 선의가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의 방법

우선, 위 계약금 1,300만원이 상속재산인지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2018. 10. 18.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계약 당일 계약금 1,300만원을 지급받고 2018. 10. 31. 사망하였는데,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위 계약금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계약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은 법리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담보가등기가 사해행위 후 말소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약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1억 3,000만원에서 위 계약금 1,300만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담보가등기 및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합계 109,348,500원(3,250만원+5,980만원+17,048,500원)을 모두 뺀 7,651,500원(1억 3,000만원 - 1,300만원 - 109,348,500원) 중 2/7지분에 해당하는

2,186,142원(원 미만 버림)이고, 이는 원고의 채권액보다 적으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2,186,142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가액배상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2,186,14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재판장판사최은주

판사정원

판사김유성

별지